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과업내역서(계약조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폐기물(폐합성수지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위탁하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성동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칭한다)의 계약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 공정

폐기물(폐합성 폐기물)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수송차량으로 “계약 상대자”的 최종처리 장소로 수송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선별 및 파쇄 · 소각 · 재활용품 제조 등 적정 처리 ⇒ “계약상대자”는 반입증명 자료 첨부하여 처리비용 청구 ⇒ “발주기관”은 처리비 지급

나. 운송 및 처리조건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的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수송하고, 수송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 “발주기관”이 수송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수용하며, 타 업체의 폐기물에 우선하여 “발주기관”的 폐기물을 반입 · 처리한다.
- 단,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송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的 사정상(공장 가동중단, 야적장 협소 등)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통보에 의하여 일정기간(1주일 이내) 반입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연간 단가계약의 처리물량은 예정량이며, 처리물량이 예정량 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고 총량으로, 처리물량 초과 시에는 쌍방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2. 권리의무 양도

-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최종처리를 타업체에 재위탁하지 못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 청구 금지 등 성실의무 이행을 다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나. “계약상대자”가 최종처리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최종 처리비용 청구

-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월 단위로 소정의 서류 구비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처리비용 청구시 계량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처리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접수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4. 연간 단가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다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시까지 본 연간 단가계약으로 폐기물을 최종 처리한다.

5. 계약 위반시 조치

계약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的 폐기물을 적법하게 최종 처리하며, “계약상대자”的 사정으로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미이행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무 불이행조치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014. 12.

작성자 : 행정7급

이 승근 (인)

확인자 : 청소행정과장

박 사채 (인)